

「토지주택연구」 발간 및 편집규정

○ 제14조(표 및 그림) 개정

- 현행 영문 작성에서 국문 작성으로 변경

: 2026.08.27. 개정, 2027.01.01. 시행(3월호부터 적용)

현행	개정(안)
제14조 (표 및 그림) 1. 표 및 그림의 제목과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한다. 2. 표 번호는 Table 1, Table 2의 순으로 표 상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. 3. 그림 또는 사진 번호는 Fig. 1, Fig. 2의 순으로 그림 하단의 중앙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. 4.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.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컬러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인쇄하여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. 5.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를 영문으로 작성한다. 국문자료인 경우 영문으로 번역한 출처 마지막에 '(in Korean)'을 추가한다. 6. 국문논문은 참고문헌에 표, 그림 출처 문헌을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. 영문 전환 후 마지막에 '(in Korean)'을 추가한다. 영문논문은 영문만 작성한다.	제14조 (표 및 그림) 1. 표 및 그림의 제목과 내용은 국문으로 작성한다. 2. 표 번호는 표 1, 표 2의 순으로 표 상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. 3. 그림 또는 사진 번호는 그림 1,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하단의 중앙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. 4. 좌동 5.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를 원어로 작성한다. 6. 삭제

○ 제15조(인용문헌, 각주 및 참고문헌 등 표기법) 개정

- 참고문헌 표기법 중 영문병기 조항 삭제

: 2026.08.27. 개정, 2026.10.01. 시행

현행	개정(안)
제15조 (인용문헌,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법) 3. 참고문헌 가.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참고문헌 목록에 표기한다. 나. 참고문헌은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, 영문문헌을 제외한 모든 문헌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. 다.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. 그 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, 인터넷 사이트를 기재한다. 이하 생략	제15조 (인용문헌,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법) 3. 참고문헌 가. 좌동 나. 참고문헌은 원어로 표기한다. 단, 영문논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. 다. 좌동 이하 생략